

시 민

주무관	노동정책과장	경제진흥실장	행정1부시장	서울특별시장
김덕환	이병수	최동윤	김상범	04/02 박원순
협 조	일자리기획단장 예산담당관 생활환경과장 노동정책팀장			김의승 한영희 代이상진 김순희

문서번호	노동정책과-3046
결재일자	2014.4.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2호

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

2014. 3월

경제진흥실
(노동정책과)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■ (민간부문 청소근로자 확대 적용 가능) 무 □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□ (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■ (건축사 등 자문TF운영) 무 □
	● 음 브 즈 만 : 유 □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□ (예시 :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) 무 □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■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■ 성인지 □ 빗물순환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■ 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바른 우리말 □ 무 □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□ (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) 무 ■
	● 기 업 : 유 □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예산담당관, 생활환경과 등 관계부서 협의완료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■ (산하기관 실태조사 실시) 무 □
언 론 홍 보 계 획	● 홍 보 계 획 : 보도자료 ■ 기자설명회 □ 현장설명회 □ 기획보도 □ 기고문 □ 기타 □ () 없음 □

「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」 시행계획

전문가 자문, 현장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「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」을 확정·시행하여 청소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

- 미흡한 휴게시설은 청소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현장조사결과 일부기관에서 기계실, 비닐하우스를 휴게실로 사용
 - 악취,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청소도구 등이 비치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
- 휴게실 등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
 - 휴게실, 샤워실 등 청소근로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마련과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 개선

〈추진근거〉

- ◆ 시장 요청사항(578번, '13.10.21)
 - 우리시, 산하기관의 청소·경비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대책 마련
- ◆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 및 제29조(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)
 -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필요 조치를 의무화(법 제24조)
 - 도급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(법 제29조)
- ◆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3(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)
 - 휴게시설, 세면·목욕시설, 세탁시설, 탈의시설, 수면시설 등의 설치 규정

II 청소근로환경 실태

□ 청소근로자 현황

- 市 본청 및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의 청소업무 종사자 규모는 4,217명('14. 2월 기준)

구 분	간접고용 근로자 현황(명)			
	계	청소	시설·경비	기타
계	5,950	4,217	1,274	459
본청·사업소	1,268	582	537	149
투자출연기관	4,682	3,635	737	310

-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기관의 청소근로자 3,435명은 '14. 2월 현재 직접고용 완료
 - '14년말까지 나머지 청소근로자 782명도 직접고용으로 전환예정
 - 도시철도공사(도시철도그린환경, '13.4월), 서울메트로(서울메트로환경, '13.6월)는 자회사 설립으로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
- 자치구 환경미화원은 총5,577명으로 직영 2,559명, 대행 3,018명('13.11월 기준)

□ 청소근로환경시설 현황

- 본청 및 사업소, 투자출연기관

(단위 : 개소, '13. 9월 기준)

구 분	전용 휴게실			전용 목욕실	전용 세탁실	전용 탈의실
	계	남	여			
계	164	75	89	35	39	71
본청·사업소	110	51	59	18	18	44
투자출연기관	54	24	30	17	21	27

※ 서울메트로, 도시철도공사의 역사별 휴게실은 산입 제외

- 휴게실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소근로자 전용 휴게실 운영

- 목욕실, 세탁실의 청소근로자 전용 비율이 적은 것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소근로자가 5명 내외의 소수인 관계로 일반직원과 공용으로 사용
- 청소근로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청소근로자 전용 세면·목욕시설, 세탁시설 설치 필요

○ 자치구

(단위 : 개소, '13.11월 기준)

구 분	계	공공건물	주택(건물)임차	컨테이너·조립식
계	493 (비율)	117 (23.6%)	156 (31.7%)	220 (44.7%)
직영	336	94	106	136
대행	157	23	50	84

- 직영 미화원 휴게실은 가로청소 담당구역 또는 권역별로 운영
- 대행업체 미화원 휴게실은 적환장, 차고지 내에 설치 운영

□ 청소근로환경 실태분석

문 제 점	주요원인	개선방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부에서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을 휴게공간으로 조성 ▶ 지하에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소음, 하수구 악취 등에 취약 ▶ 남녀 공동사용, 낙후시설, 좁은 면적, 작업공간과 휴게시설 위치의 부조화 등 존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환경시설에 대한 기준 미비 	<p><i>“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기준 마련”</i>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현장근로자 근무환경에 대한 기관의 인식, 관심 부족 ▶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미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	<p><i>“모범적 사용자로서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이행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 실시”</i></p>

III 그간의 추진경과

- 서울대공원 근로현장 실태 조사 : '13.10. 9
 - 공무원 휴게시설, 세면시설 실태조사 실시(노동정책과장, 노동전문관)
-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전문가 자문 : '13.11.11
 - 쾌적한 근로환경 기준 마련 방안 등(노동환경연구소, 서울디자인재단)
- 청소근로환경시설 실태조사 및 청소근로자 인터뷰 : '13.11.20
 - 서울시립대, 서부녹지사업소, 시설관리공단 등 5개소(노동정책과)
- 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자문 : '13.12. 2
 - 휴게공간 구성원칙 및 실내디자인 논의(디자인업체, 서울디자인재단)
- 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자문TF 운영(3회) : '14. 1.27 ~ 2.19
 - 가이드라인 원칙 및 세부기준 논의

IV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

1 추진방향

- 『쾌적한 근로환경에 대한 질적 측면의 기준(가이드라인)』 제시
 - 1인당 적정면적, 적정거리 분포 등 시설 설치시 고려해야 할 일정요건 제시
- 『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관리 및 실태점검』 추진
 - 기관별 자체 실태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·시행
 - 개선 미흡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(현장방문 컨설팅 등)

②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적용범위

- 청소근로자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원칙적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시 우선 적용
- 건물구조, 공간상황, 예산 등 제반 여건 고려시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

적용대상

- 市 본청 및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, 자치구 등 공공부문 청소근로 환경시설(휴게시설, 세면·목욕시설, 세탁시설, 탈의시설)에 우선 적용
- 대학, 병원, 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(민간부문 확산 유도)
- 청소근로자 외에 시설·경비업무 종사자 등 현장근로자 휴게공간 조성시 일반적인 기준으로도 이용 가능

규정유형

-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정은 근로환경시설 조성시 고려사항으로 간주
-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수사항(★)으로 표시

규정항목

- 청소근로환경시설에 대해 공간, 환경, 디자인 측면에서 규정

구 분	규 정 사 항
공 간	· 시설특성, 종사자 규모 등에 따른 설치위치, 규모, 공간구성 등
환 경	· 실내공기질, 냉·난방, 환기, 채광, 조도 등
디자인	· 자재종류, 색상 및 물품수납함 크기, 개수, 냉장고 등의 비품

□ 5대 구성원칙('1 to 5' 원칙)

'1' 원칙 휴게실, 샤워실, 탈의실, 세탁실을 일체형(1)으로 구성한다.

- ▶ 휴게실, 샤워실, 세탁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

'2' 원칙 청소근로자만의 분리(2)된 전용공간을 확보한다.

- ▶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(청소근로자 현장의견 반영)
- ▶ 남녀 고용규모 등에 따라 남녀 구분 설치

'3' 원칙 3분(3) 내외에 접근가능한 거점별 공간을 마련한다.

- ▶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 거점별 휴게공간 마련
(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內에 휴게공간 설치)

'4' 원칙 4대(4) 필수비품을 구비한다.

- ▶ ① 냉·난방기, 환풍기
- ▶ ② 생활가전제품(냉장고, 전자레인지, 전기포트, 세탁기)
- ▶ ③ 수납가구(개인사물함, 신발장) * 개인사물함은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수납
- ▶ ④ 침구류(이불, 베개)

'5' 원칙 1인당 5㎡(5)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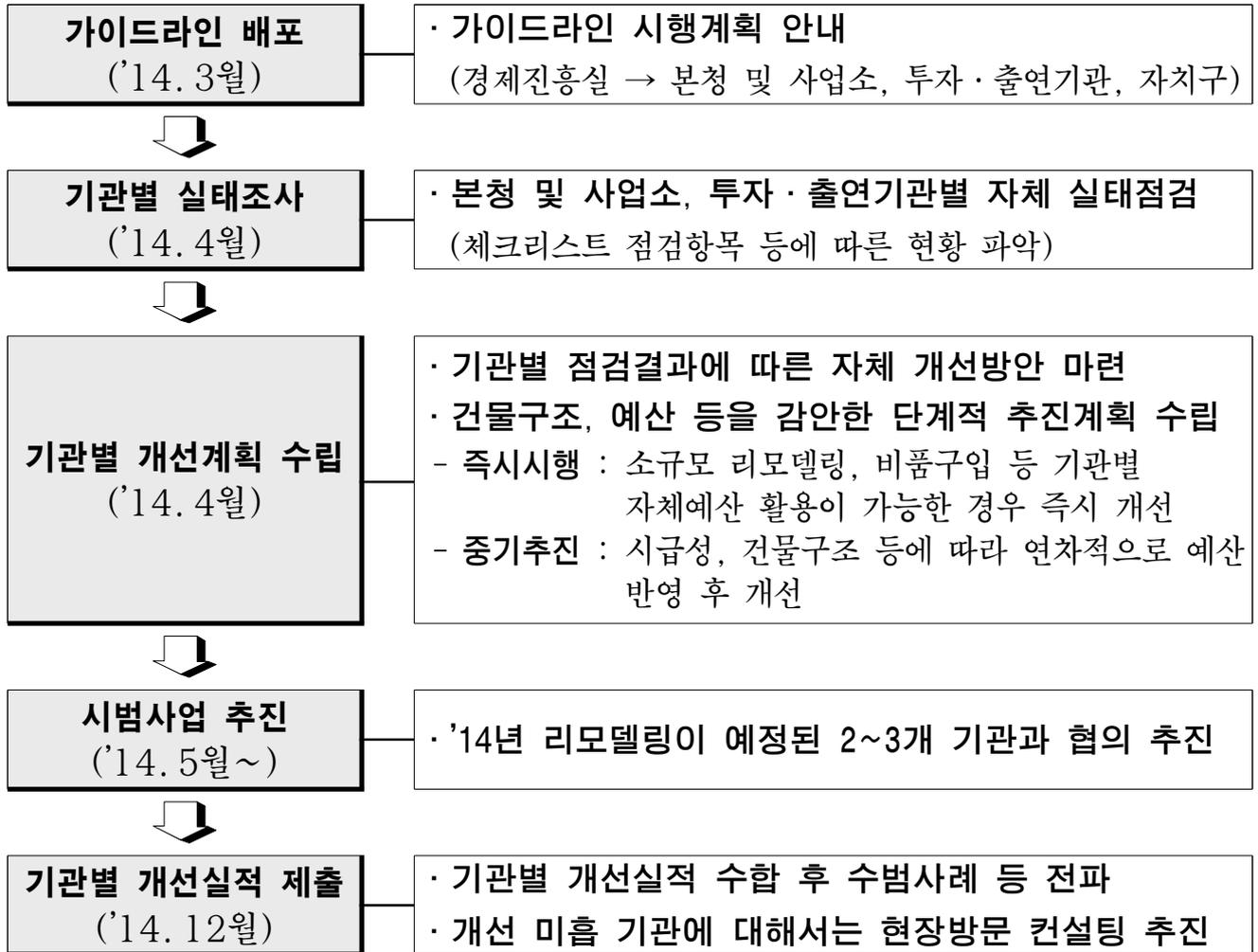
- ▶ 1인당 5㎡ 내외의 공간 확보(휴게실은 바닥난방 필수)
- ▶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은 별도 확보
- ▶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적정온도, 습도, 조명, 색채 유지

□ 세부 가이드라인

구 분	주요 가이드라인	
공간	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게공간은 작업공간과 인접하도록 배치 • 다른 근로자와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, 전용공간 확보 •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
	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당 면적 : 5㎡(1.65평) 내외로 구성
	공간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게, 세면(목욕), 세탁, 탈의,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 동일공간 내에 구성 • 청소도구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(휴게공간이 작업도구 보관함으로 사용되는 것 방지)
환경	실내조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명효율이 높은 LED 사용, 공간활용 목적에 따라 100~200Lux 내외로 설치 • 경직된 한색계열보다는 중성색과 난색계열의 조화로운 조명색 사용
	실내공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풍기 설치 • 적정온도 유지(여름 26~28℃, 겨울 18~22℃) / 습도 50~55% 유지
	실내소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• 작업공간 소음이 휴게 공간내부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차음성능 마감재 사용
디자인	마감재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닥 : 전기온돌, 내마모성, 내수성, 내화성 등을 고려한 재료 선택 • 벽 : 내구성, 내수성, 눈부심이 없는 재료,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• 천장 : 오염, 부식에 강한 재료, 흡음성이 강하고, 불연, 질감이 좋은 재료 사용
	실내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색의 배분은 주조색 60%, 보조색 30%, 강조색 10% •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위해 난색계열의 중명도, 저채도의 색 사용
	가구 전자제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전기포트, 세탁기 등 비치 • 개인사물함, 신발장(도어형), 다목적 수납함, 싱크대 배치

③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적용계획

□ 추진일정



□ 가이드라인 적용시 소요예산(추정치)

공간형태	규모	증축시 소요예산(단위:백만원)					비고	
		계	건축공사	전기공사	제경비	비품(냉장고 등)		
실내형	5인용	25m ²	62	35	6	14	7	리모델링시 증축 소요비용의 75~80% 예상
	10인용	50m ²	107	63	11	26	7	
	1인용	1.65m ²	4~7			3~6	1	기성품 구매
실외형 (컨테이너형)	7인용	28.2m ²	19~22			12~15	7	기성품 구매

※ 위 소요예산은 기존 건축물 규모 및 구조, 자재가격 변동 등 제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V 협조사항

-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계획 수립 제출 : 본청 및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
 - 각 기관별 개선계획에는 청소근로환경시설 현황, 체크리스트 (붙임 가이드라인 참고)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,
 - 기관별로 산하사업소, 센터 등이 별도로 있거나 여러개의 청사가 있는 경우 개개 시설별로 모두 조사(한강사업본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 시설관리공단, SBA 등)
 - 기관별 상황에 맞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'14. 4.25(금)까지 노동정책과로 제출

-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사업 예산반영 협조 : 예산담당관
 - 각 기관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검토 후(노동정책과) 개선이 시급한 곳은 '14년도 추경시 예산반영 조치 검토
 - 각 기관에서 '15년도 예산편성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할 경우,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적극 협조

- 자치구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추진 : 생활환경과 총괄
 - 각 자치구에서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이행 권고
 - 자치구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후환경본부 자체 추진계획 수립·시행

붙 임 :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1부. 끝.